

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오니, 누구든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2018. 6. 18

부 산 해 양 경 찰 서 장

□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

1. 구 역

가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

-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(수영안전수역50M,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)
- 무동력(서프보드)이용자에 한해 송정해변 주차장 육군휴양소 2,3번 화단 중간지점에 무동력(서프보드) 활동허용(폭80M 확보)

나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

-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(수영안전수역50M,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)
- 팔레드시즈 중간지점부터 미포돌체 사이 구간에 한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을 허용(약300M 구간)
-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사이 20M 구간은 안전구역(Safety Zone)
-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구역은 파라다이스호텔과 미포돌체 사이 구간에 대하여 일출 전 30분부터 09시까지, 18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허용(단, 기상악화시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른다)
- 부분개장기간(6.1~6.30)에 한하여 관광안내소에서 이벤트광장 사이(약400M)구간은 물놀이구역에 해당하며, 그 외 구역은 수상레저활동이 가능 ※ 단, 물놀이구역 양쪽으로 20M 구간은 안전구역(Safety Zone)

다.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

-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(수영안전수역50M,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)

라.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

- 해안선으로부터 120M이내 해상(수영안전수역70M,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)
- 해수욕장공영주차장 좌측끝단에서 해안선 바깥쪽으로 120M해상
- 레저기구 출입로는 물론대 우측끝단에서 바깥쪽으로 120M해상(폭50)

마.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부표

-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(수영안전수역50M, 금지수역50이내 접근 금지)
- 레저기구 이용자 출입로는 해수욕장 서편방파제에서 그늘막(쉼터)까지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으로 100M 해상
- 송도 다이빙대 외측 20M까지 금지구역 부표설치 및 해안선에서 송도 다이빙대까지 출입로 확보
- ※ 송도 다이빙대 주변 20M부표이내 수상레저기구 접근금지
(모든 동력·무동력 수상레저기구)

바. 해수욕장별 금지구역 지정 내용(도면참조)

2. 기 간 :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

3. 대 상 : 모든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

○ 재검토 기한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18 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『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』 고시(부산해양경비 안전서 제2015-21호)는 폐지한다.

